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6.

발 의 자 : 김위상 · 김미애 · 김소희
배준영 · 김기현 · 우재준
조지연 · 신성범 · 이인선
김선교 · 김형동 · 추경호
이달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,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.

때문에,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,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, 훈련·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.

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·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,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·보급 및 인프라 구축

제165조제2항제1호 중 “제7호까지 및 제9호의”를 “제7호까지, 제9호 및 제10호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 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 9. (생 략) ② (생 략)	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8. (현행과 같음) 9. <u>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·보급 및 인프라 구축</u> 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65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(생 략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제4조제1항제2호부터 <u>제7호</u> <u>까지</u> 및 <u>제9호</u> 의 사항에 관한 업무 2. ~ 41. (생 략) ③ (생 략)	제165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제7호</u> <u>까지</u> , <u>제9호</u> 및 <u>제10호</u> 의----- ----- 2. ~ 41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